

#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

## 2022년 2차 이사회 회의록

### 1. 회의소집통지 내용

- 가. 통 지 일 : 2022년 11월 28일(월)
- 나. 통지대상 : 소집 통지자(대표이사) 외 이사 6명, 감사 2명
-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 라. 통보의안(회의목적)
  - 제1호 의안 : 2022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경 예산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기본재산 처분(임대)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임원(감사) 선임의 건

### 2. 회의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오전 11시

### 3. 회의장소 : LG마포빌딩 10층 회의실

### 4. 회의안건

- 가. 제1호 의안 : 2022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경 예산 승인의 건
- 나. 제2호 의안 : 기본재산 처분(임대) 승인의 건
- 다. 제3호 의안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 라. 제4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
- 마. 제5호 의안 : 임원(감사) 선임의 건

### 5. 이사정수 : 7명

### 6. 출석임원 : 구연경, 한승희, 한준호, 윤경희, 신영수, 박영배, 인요한 (이사 7명) 안경태, 안용석 (감사 2명)

### 7. 결석임원 : 없음

### 8.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구연경 대표이사 : 참석 임원에게 감사를 표하다. 개회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LG복지재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9. 회의내용

가. 제1호 의안 : 2022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경 예산 승인의 건

1) 의안설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1호 의안인 2022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경 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사무국 최민호 국장에게 의안 설명을 요구하다.
- 최민호 국장 : '붙임'의 2022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경 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설명하다.

2) 결의내용

- 참석이사 전원 : 사업계획 및 예산서(안)를 살피고 상호 논의하다.
- 한승희 이사 : 집행 실적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배당금 수입 등에 따라 세입·세출 내역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이견이 없음을 밝히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발의하다.
- 한준호 이사 : 한승희 이사의 발의에 동의하다.
- 인요한 이사 : 한준호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 찬성하다.
- 구연경 대표이사 :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1호 의안인 2022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경 예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붙임. 2022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경 예산(안)

<사업계획> (단위:원)

세출구분	사업명	2022년 예산	2022년 추경	차액
사업비	의인상	1,000,000,000	1,000,000,000	-
	성장호르몬제 지원	700,000,000	965,000,000	265,000,000
	소외계층지원	200,000,000	136,000,000	-64,000,000
	기타복지	100,000,000	-	-100,000,000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1,000,000,000	132,000,000	-868,000,000
	사할린 한인 지원	300,000,000	50,126,981	-249,873,019
과년도지출	성장호르몬제 지원	20,000,000	32,941,098	12,941,098
합 계		3,320,000,000	2,316,068,079	-1,003,931,921

<예산서>

(법인회계)

(단위:원)

구분	항목	2022년 예산	2022년 추경	차액	비고
세입	후원금수입	700,000,000	979,000,000	279,000,000	
	전입금	2,200,000,000	1,900,000,000	-300,000,000	
	이월금	2,775,000,000	1,989,734,210	-785,265,790	
합계		5,675,000,000	4,868,734,210	-806,265,790	
세출	사무비	356,000,000	552,000,000	196,000,000	
	재산조성비	0	11,385,000	11,385,000	
	사업비	3,300,000,000	2,283,126,981	-1,016,873,019	
	과년도지출	20,000,000	32,941,098	12,941,098	
	예비비	1,999,000,000	1,989,281,131	-9,718,869	
합계		5,675,000,000	4,868,734,210	-806,265,790	

구분	항목	2022년 예산	2022년 추경	차액	비고
세입	재산수입	2,669,000,000	3,755,000,000	1,086,000,000	
	이월금	2,809,000,000	3,847,520,189	1,038,520,189	
	합계	5,478,000,000	7,602,520,189	2,124,520,189	
세출	재산조성비	904,000,000	907,000,000	3,000,000	
	전출금	2,200,000,000	1,900,000,000	-300,000,000	
	예비비	2,374,000,000	4,795,520,189	2,421,520,189	
	합계	5,478,000,000	7,602,520,189	2,124,520,189	

나. 제2호 의안 : 기본재산 처분(임대) 승인의 건

1) 의안설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2호 의안인 기본재산 처분(임대)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사무국 최민호 국장에게 의안 설명을 요구하다.
- 최민호 국장 : 건물 임대계약 조건 변경 배경과 '붙임'의 임대차 계약(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

2) 결의내용

- 참석이사 전원 : '붙임'의 임대차 계약(안)을 살피고 상호 논의하다.
- 박영배 이사 : 임대관리비 상승에 따라 임대료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견이 없음을 밝히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발의하다.
- 신영수 이사 : LG그룹 계열회사 입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인 법인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며, 박영배 이사의 발의에 동의하다.
- 인요한 이사 : 신영수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 찬성하다.
- 구연경 대표이사 :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2호 의안인 기본재산 처분(임대)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붙임. 임대차 물건 및 현 임대계약 조건, 변경 계약(안)

<임대차 물건 및 현 임대계약 조건>

구분	유형	위치	계약면적	전용면적
기본재산	건물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31, 6층 ~ 7층	5,334.80㎡	2,879.86㎡
임대기간		임차인	임차보증금	월 임대료(VAT 포함)
'22.01.01 ~ '22.12.31		엘지전자 주식회사	1,291,020,000원	142,012,200원

<임대차 계약(안)>

임대기간	임차인	임차보증금	월 임대료(VAT 포함)
'23.01.01 ~ '23.12.31	엘지전자 주식회사	1,334,766,000원	146,824,260원

다. 제3호 의안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1) 의안설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3호 의안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사무국 최민호 국장에게 의안 설명을 요구하다.
- 최민호 국장 : '붙임'의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설명하다.

2) 결의내용

- 참석이사 전원 : 사업계획 및 예산서(안)를 살피고 상호 논의하다.
- 윤경희 이사 : 건물 임대조건 변경사항과 목적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 이견이 없음을 밝히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발의하다.
- 인요한 이사 : 윤경희 이사의 발의에 동의하다.
- 신영수 이사 : 인요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 찬성하다.
- 구연경 대표이사 :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3호 의안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붙임.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계획>

(단위:원)

세출 구분	사업명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차액
사업비	의인상	1,000,000,000	1,000,000,000	-
	성장호르몬제 지원	965,000,000	1,210,000,000	245,000,000
	소외계층지원	136,000,000	200,000,000	64,000,000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132,000,000	1,868,000,000	1,736,000,000
	사할린 한인 지원	50,126,981	250,000,000	199,873,019
과년도지출	성장호르몬제 지원	32,941,098	20,000,000	-12,941,098
합 계		2,316,068,079	4,548,000,000	2,231,931,921

<예산서>

(법인회계)

(단위:원)

구분	항목	2022년 추경	2023년 예산	차액	비고
세입	후원금수입	979,000,000	1,200,000,000	221,000,000	
	전입금	1,900,000,000	3,800,000,000	1,900,000,000	
	이월금	1,989,734,210	1,989,281,131	-453,079	
합계		4,868,734,210	6,989,281,131	2,120,546,921	
세출	사무비	552,000,000	456,000,000	-96,000,000	
	재산조성비	11,385,000	0	-11,385,000	
	사업비	2,283,126,981	4,528,000,000	2,244,873,019	
	과년도지출	32,941,098	20,000,000	-12,941,098	
	예비비	1,989,281,131	1,985,281,131	-4,000,000	
합계		4,868,734,210	6,989,281,131	2,120,546,921	

구분	항목	2022년 추경	2023년 예산	차액	비고
세입	재산수입	3,755,000,000	3,847,000,000	92,000,000	
	이월금	3,847,520,189	4,795,520,189	948,000,000	
	합계	7,602,520,189	8,642,520,189	1,040,000,000	
세출	재산조성비	907,000,000	955,000,000	48,000,000	
	전출금	1,900,000,000	3,800,000,000	1,900,000,000	
	예비비	4,795,520,189	3,887,520,189	-908,000,000	
	합계	7,602,520,189	8,642,520,189	1,040,000,000	

라. 제4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

1) 의안설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4호 의안인 정관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사무국 최민호 국장에게 의안 설명을 요구하다.
- 최민호 국장 : 정관 변경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하다.
- \* 변경 조항 : 제6조(자산의 관리), 제8조(회계의 구분 등),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제16조(임원의 선임),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제18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제25조(이사회회의 소집 등),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8조(공고의 방법)

첨부. 정관변경(안)

2) 결의내용

- 참석이사 전원 : 붙임의 정관변경(안)을 살피고 상호 논의하다.
- 한준호 이사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리 지침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견이 없음을 밝히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발의하다.
- 박영배 이사 : 한준호 이사의 발의에 동의하다.
- 윤경희 이사 : 박영배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 찬성하다.
- 구연경 대표이사 :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4호 의안인 정관변경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마. 제5호 의안 : 임원(감사) 선임의 건

1) 의안설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5호 의안인 임원(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사무국 최민호 국장에게 의안 설명을 요구하다.
- 최민호 국장 : 안용석 감사의 임기가 '23년 1월 17일자로 만료돼 후임 감사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정관 제28조제1호(의결제척사유)에 의거 본인의 임기만료에 대한 후임 선임 의결시 해당 임원은 퇴실하고, 남은 이사들이 후임을 심의 의결함을 설명하다.

2) 결의내용

- 구연경 대표이사 : 안용석 감사의 퇴실과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안용석 감사 퇴실)
- 참석이사 전원 : 임원 임기만료 내용을 살피고 연임을 포함하여 후임 선임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다.
- 신영수 이사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안용석 감사의 연임을 발의하다.
- 한준호 이사 : 이사회 참여 실적 또한 뛰어난을 언급하며, 안용석 감사의 연임에 동의하다.
- 인요한 이사 : 한준호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 안용석 감사의 연임에 전원 찬성하다.  
(연임 의결에 따라 안용석 감사 재실하고, 연임 승낙 후 임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다.)

\* 임원(감사) 선임 결과


직책	성명	임기	비고
감사	안용석	'23. 1. 18 ~ '25. 1. 17	연임


10. 폐 회


- 대표이사는 이상과 같이 금일의 의안이 모두 심의 종료되었음을 고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의결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2022년 12월 9일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


대표이사 구연경 (인) 


이사 한승희 (인) 


이사 한준호 (인) 


이사 윤경희 (인) 

이 사 신 영 수 (인) 

이 사 박 영 배 (인) 

이 사 인 요 한 (인) 

감 사 안 경 태 (인) 

감 사 안 용 석 (인) 



첨부. 정관변경(안)

현행 정관	개정안
제6조 (자산의 관리) ...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 자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 전년도 자산취득상황을 매년 <b>1월말까지</b> 전년도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자산의 관리) ...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 자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 전년도의 자산취득상황을 매년 <b>3월말까지</b> 전년도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b>일반회계</b> 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8조(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b>법인회계</b> 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b>1월 이내</b> 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 ③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이상은 <b>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b> 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b>임원을 선출한 때에는</b>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 ②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이상은 <b>사·도 사회보장위원회</b> 또는 <b>지역사회보장협의체</b> 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b>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b>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b>선임할 수 없다.</b>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b>아니어야 한다.</b>
제18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b>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b> ...	제18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b>임원이 될 수 없다.</b> ...
제25조 (이사회회의 소집 등) ... ② 정기이사회는 <b>매년 1월중</b> 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	제25조 (이사회회의 소집 등) ... ② 정기이사회는 <b>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b>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
제29조 (이사회회의록)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강 및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b>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b> 하여야 한다. ...	제29조 (이사회회의록)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강 및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b>참석임원 전원이 날인</b> 하여야 한다. ...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b>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b>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8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b>한국경제신문에 실는다.</b> ...	제38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b>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법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b> 한다. ...